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황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소득 공제	기부금 (이월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IV. 세액감면 및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조합 등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IV. 세액감면 및 공제	공제 종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세액공제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12% 또는 15%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V. 세액감면 및 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2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 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15% (25%)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종교단체명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 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2. 연금・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함께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투자금액	공제율
	조합 등		10%
		3천만원 이하	100%
	벤처 등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한 도 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50세 이상 연 6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다만,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p>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p>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외국납부공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유의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입소통지서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의사항

-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소득 · 세액공제명세서

연금계좌 소득 · 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소득 ·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작성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 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